



제 429회 국회 (정기회)
제2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 이용 · 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주민 참여 확산을 위한 행정적 · 재정적 지원 확대〉
■ 이학영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1801호)

2025. 9.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 참고자료	7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이학영의원 등 10인
2. 발의연월일 : 2025. 7. 29.
3. 회부연월일 : 2025. 7. 30.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신·재생에너지 설비가 설치된 지역의 주민이 발전사업에 출자하거나 발전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협동조합에 조합원으로 출자하는 등의 방식으로 발전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발전사업자는 주민 참여에 따른 가중치로 발생한 수익을 지역 주민에게 제공하여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대한 주민 참여가 확대되도록 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 참여 사업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주민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이끌어내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주민 참여를 확산시키는 데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주민의 참여를 촉진하고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대한 주민의 수용성을 더욱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7조의2제1항 후단 신설).

Ⅲ. 검토의견

개정안은 신·재생에너지 설비가 설치된 지역의 주민이 참여하는 발전사업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률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7조의2제1항 후단 신설).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7조의2(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대한 주민 참여) ① 신·재생에너지 설비가 설치된 지역의 주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방식으로 해당 지역의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u><후단 신설></u>	제27조의2(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대한 주민 참여) ① ----- ----- ----- ----- -----,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 참여를 확산시키는 데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출자하는 방식	1. ~ 3. (현행과 같음)
2.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협동조합(「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을 말한다)에 조합원으로 출자하는 방식	
3.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방식	
②·③ (생략)	②·③ (현행과 같음)

현행법 제27조의2제1항은 신·재생에너지 설비가 설치된 지역의 주민이 ①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출자하는 방식, ②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협동조합에 조합원으로 출자하는 방식, ③ 그 밖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방식으로 해당 지역의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재생에너지 주민참여제도는 일정 규모 이상의 태양광 또는 풍력 발전사업에 지역주민이 직접 참여하고, 주민참여에 따른 추가 REC 수익을 발전사업자가 지역주민에 제공하여 주민 수용성을 확보하는 체계로 2017년부터 시행되어 왔음.

재생에너지 주민참여제도 개요

구 분	내 용
대상사업	태양광 500kW 이상 또는 풍력 3,000kW 이상 재생e 발전사업
참여자격	인근 거주민(1년↑) 등이 지분·채권·펀드의 방식으로 발전사업 참여
이익공유	주민참여 추가 REC로 인한 수익 지역주민 제공 의무(신재생법)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발전이익의 공유 방식에 관하여, 현행법 제27조의2제2항1)은 주민참

- 1) 제27조의2(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대한 주민 참여) ① 신·재생에너지 설비가 설치된 지역의 주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방식으로 해당 지역의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1~3. < 생 략 >

②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는 제12조의7제3항에 따라 발급받은 공급인증서 중 제1항에 따른 주민 참여로 인한 가중치로 발생한 수익을 지역 주민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역의 범위 및 제2항에 따라 지역 주민에게 제공하는 수익과 관련한 기준·절차·내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한다.

여형 발전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공급인증서 가중치 수익²⁾을 지역 주민에게 제공하도록 하고, 같은 조 제3항은 주민참여형 발전사업의 지역 범위 및 수익 배분 방식의 기준, 절차, 내용 등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위임하여 정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따라 제정된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운영지침」은 태양광에 대해서는 0.08~0.2, 육상풍력은 0.1~0.2, 해상풍력은 0.075~0.3의 추가 가중치를 부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³⁾.

다만, 주민참여비율이 총사업비의 4%를 초과하게 되는 시점부터는

2) 통상 재생에너지사업자는 발전량 1,000kWh당 1 REC를 받아 이를 REC 수요 기업이나 발전소에 판매하고 있음. 이 때 REC 가중치가 0.1이 추가된다는 것은 REC가 10% 더 발급된다는 의미임.

3)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운영지침(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7조의2(주민참여사업의 추가 가중치 부여) ① 공급인증기관의 장은 법 제27조의2제1항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주민이 참여하는 경우로서 이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에는 별표2의 비고 제16호에 따라 발전사업자에게 주민참여 비율별로 추가 가중치를 부여한다.

<별표 2>의 비고 제16호에 따른 가중치 적용 기준 요약

구분	가중치 적용기준			
	500kW 이상 태양광		3,000kW 이상 육상풍력	3,000kW 이상 해상풍력
	이격거리 기준미준수	이격거리 기준준수		
총사업비의 1% 이상 2% 미만	(최종 가중치 부여 값)			(최종 가중치 부여 값) + 0.075
총사업비의 2% 이상 3% 미만	(최종 가중치 부여 값) + 0.08	(최종 가중치 부여 값) + 0.1	(최종 가중치 부여 값) + 0.1	(최종 가중치 부여 값) + 0.15
총사업비의 3% 이상 4% 미만	(최종 가중치 부여 값) + 0.12	(최종 가중치 부여 값) + 0.15	(최종 가중치 부여 값) + 0.15	(최종 가중치 부여 값) + 0.225
총사업비의 4% 이상	(최종 가중치 부여 값) + 0.16	(최종 가중치 부여 값) + 0.2	(최종 가중치 부여 값) + 0.2	(최종 가중치 부여 값) + 0.3

추가로 부여되는 가중치가 없으므로 발전사업자 입장에서는 주민참여 비율을 4%를 초과하는 수준으로 확보할 인센티브가 제한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⁴⁾. 또한, 현행과 같이 단순한 수익 공유뿐만 아니라 인허가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인 심사와 신속한 인허가 등 행정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어 왔음.

개정안은 주민참여형 발전사업에 대하여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공급인증서 가중치 외에도 직접적인 지원을 제공하고, 이를 통해 재생에너지 발전 시설에 대한 지역사회의 수용성을 제고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임.

이와 관련하여 산업통상자원부는 현행 공급인증서 가중치 부여 제도 외에도 현행법 제10조제16호에 따라 마을 태양광에 장기·저리의 용자를 지원⁵⁾하고 있는 등 기존 법률 체계 하에서도 주민참여형 발전사업에 대한 직접적인 재정지원이 가능하고,

지방자치단체도 현재 조례 등 자치법규로써 지역 여건에 맞는 행·재

4) 재생에너지 발전 ‘주민 참여’ 높이려면...“제도 이렇게 바뀌라”(머니투데이 기사, 2022.5.17.)

5)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9조(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 사업비의 조성) 정부는 실행계획을 시행하는 데에 필요한 사업비를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計上)하여야 한다.

제10조(조성된 사업비의 사용)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9조에 따라 조성된 사업비를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한다.

16. 그 밖에 신·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정적 지원을 실시하고 있으므로, 개정안과 같이 일률적으로 주민 참여 확산에 필요한 지원사항을 규정할 실익이 다소 부족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문 의 처
02)6788-5468

참고

재생에너지 주민참여제도 현황

□ 제도 개요

- 일정규모 이상¹⁾의 재생에너지 발전사업(태양광, 풍력)에 지역주민 등²⁾이 직접 참여하고 발전 이익 공유³⁾하는 대표적 주민 수용성 확보 제도('17.~)
 - 1) 대상사업: 태양광 500kW 이상 또는 풍력 3,000kW 이상 재생e 발전사업
 - 2) 참여자격: 인근 거주민(1년↑) 등이 지분·채권·펀드의 방식으로 발전사업 참여
 - 3) 이익공유: 주민참여 추가 REC로 인한 수익 지역주민 제공 의무(신재생법)
-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한계* 개선 (RPS고시 개정'23.4)
 - * 발전원 및 사업 규모별 특성, 인접지역 영향, 대상별 형평성 등 고려 미흡

< 고시 개편 주요내용 >

참여범위 확대	(기존) 참여범위 읍면동으로 동일 → (개편) 100MW 이상 사업은 시군구로 확대
인접지역 혜택	(기존) 인접여부 무관, 동일 혜택 → (개편) 인접주민 참여 의무화, 수익배분 우대
투자기준 신설	(기존) 총참여금액의 30%까지 가능 → (개편) 1인당 주민 1천 인접민 3천 어민 4천만원
가중치 세분화	(기존) REC 추가 가중치 0.1/0.2 → (개편) 태양광 008-02, 육풍 01-02, 해풍 0075-03

□ 주민참여사업 현황

- '25.6월 기준 2.1GW*(누적)이며, 이 중 태양광은 1.6GW, 풍력은 0.5GW
- * '17년 제도 신규 도입(고시), '20년부터 주민참여 사업 큰 폭으로 증가 추세

< 주민참여형 발전사업 현황 >

구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25.6월	합계
태양광	1개소 (2MW)	6개소 (7MW)	32개소 (144MW)	100개소 (461MW)	44개소 (347MW)	46개소 (366MW)	22개소 (255MW)	12개소 (23MW)	263개소 (1,582MW)
풍력	-	-	1개소 (43MW)	1개소 (28MW)	-	5개소 (129MW)	4개소 (153MW)	2개소 (116MW)	13개소 (469MW)
계	1개소 (2MW)	6개소 (7MW)	33개소 (187MW)	101개소 (489MW)	44개소 (347MW)	51개소 (495MW)	26개소 (408MW)	14개소 (139MW)	276개소 (2,074MW)